

의안번호	2205239
의 퇴 인	이달희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4.
추계번호	24F485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별로 법인세율 차등화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2~7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수는 2026년 3,900억원, 2030년 6조 6,73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4조 8,531억원(연평균 4조 9,70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3,900	-55,556	-59,247	-63,089	-66,739	-248,531	-49,706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 제1항 (법인세율)	○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화 － (수도권) 현행과 동일 － (비수도권) 과표 구간별 세율 2~7%p 하향 <현행> <table><thead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/tbody></table> ⇒ <개정안> <table><thead><tr><th>본사 소재지</th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 rowspan="4">수도권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비수도권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7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2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14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17%</td></tr></tbody>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본사 소재지	과세표준	세율	수도권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비수도권	2억원 이하	7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2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14%	3천억원 초과	17%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사 소재지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도권	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수도권	2억원 이하	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1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천억원 초과	1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5조 제1항(법인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3년 본사 소재지별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본사 소재지·과세표준 구간별 기업 수는 2023년 신고 수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1법인당 과세표준은 2023년(2022년 귀속소득)을 기준으로, 향후 2024년 법인세 증감률(실적)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NABO 법인세 증감률 전망(%)¹⁾: ('24) △20.9%, ('25) 38.5%, ('26) 5.8%, ('27) 6.7%, ('28) 6.5%
 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2020~2023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20~2023년 평균 32.8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20~2023년 평균 21.5%
-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 - 본사 소재지별 법인세율 차등에 따라 본사이전 등 기업의 행태가 변화할 수 있으나,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세율만 2~7%p 인하됨에 따라 2023년 신고기준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해서만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: 2024~2028」, 2024. 10.

로 가정

- 개정안이 2024년 말 통과될 경우,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공포되어 2026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
 - 법인세 확정신고·납부에 따라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효과는 2027년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- (법인세 신고현황) 과세표준 구간 및 본사 소재지별로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, 과세표준, 1법인당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[표 2] 지역별 법인세 신고 현황: 2023년 신고법인 기준(2022년 귀속)

<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억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2억원 이하	546,059	115,752	0.2
3억원~200억원 이하	76,988	933,631	12.1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1,396	884,541	633.6
3,000억원 초과	110	1,563,953	14,217.8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억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2억원 이하	357,567	86,678	0.2
3억원~200억원 이하	48,250	498,729	10.3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563	316,832	562.8
3,000억원 초과	27	190,542	7,057.1

주: 과세표준이 “0”이거나 “음수”인 기업 제외한 수치임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과세표준 전망) 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과세표준은 향후 국회예산정 책처가 전망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법인세 증감률 실적 및 전망¹⁾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증감률(%)	△22.4	△20.9	38.5	5.8	6.7	6.5	5.8	5.6

주: 1) 2023년 증감률은 2022년 실적 대비 2023년 법인세 실적의 증감률이며, 2024~2030년 증감률은 NABO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: 2024~2028」, 2024. 10.

[표 4] 비수도권 소재 1법인당 과세표준 전망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0.2	0.2	0.2	0.2	0.2
2억원~200억원 이하	9.3	9.9	10.5	11.1	11.8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506.3	540.0	575.3	608.6	642.7
3,000억원 초과	6348.3	6770.6	7213.4	7631.7	8059.1

- (1법인당 산출세액) 1법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법인 세율을 적용하여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계

- (과세표준 2억원 이하) 세율 2%p 감소, (과세표준 2억원 이상) 세율 7%p 감소

[표 5] 비수도권 소재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
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0.004	-0.004	-0.004	-0.004	-0.005
2억원~200억원 이하	-0.6	-0.7	-0.7	-0.8	-0.8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35.4	-37.8	-40.3	-42.6	-45.0
3,000억원 초과	-444.4	-473.9	-504.9	-534.2	-564.1

- (전체 산출세액)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 (2023년 신고기준)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

[표 6]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전체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					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1,287	-1,372	-1,462	-1,547	-1,633
2억원~200억원 이하	-31,294	-33,376	-35,559	-37,621	-39,728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19,952	-21,280	-22,671	-23,986	-25,329
3,000억원 초과	-11,998	-12,796	-13,633	-14,424	-15,232
계	-64,531	-68,824	-73,325	-77,578	-81,922

- (부담세액) 앞서 추정한 산출세액 변화분에 공제·감면 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(2023년 신고기준)을 적용
- 2023년 신고기준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의 평균은 85.7%

[표 7]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부담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법인>					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-1,103	-1,176	-1,253	-1,325	-1,400
2억원~200억원 이하	-26,816	-28,600	-30,470	-32,237	-34,043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17,097	-18,234	-19,427	-20,554	-21,705
3,000억원 초과	-10,281	-10,965	-11,682	-12,360	-13,052
계	-55,297	-58,976	-62,832	-66,476	-70,199

□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 효과 기간을 반영
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- 중간예납세액 비중과 가결산 비율 감안시, 세수효과의 7.1%(= 32.8% × 21.5%)가 당해 귀속연도에 영향을 줌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20~2023년 평균 32.8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20~2023년 평균 21.5%

[표 8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2026	(중간예납)					
2027		(중간예납)				
2028			(중간예납)			
2029				(중간예납)		
2030					(중간예납)	

(2) 추계결과

□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2~7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수는 2026년 3,900억원, 2030년 6조 6,73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4조 8,531억원(연평균 4조 9,70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3,900	-55,556	-59,247	-63,089	-66,739	-248,531	-49,706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